

일반보험 증권

ORIGINAL

상품명 : 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증권번호 : FALI20210465044)

기본사항

보험기간	2021년 07월 19일 부터 2022년 07월 19일 (365일간)	전계약번호	FALI20200299221	계약일자	2021-07-15
계약자	가온방문간호요양센터 (444-80-00463)			연락처	063-837-2800
	54624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				
피보험자	가온방문간호요양센터 (444-80-00463)			연락처	063-837-2800
	54624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				
원화환산 총 가입금액		원화환산 총 보험료		원화환산 초회보험료	
52,000,000		158,180		158,180	
				납입방법	
				일시납	

소재지사항

순번	소재지주소
1	국내소재 (54624)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55 (마동, 광통신) / 물건명 : 가온방문간호요양센터

[전문직업인배상책임]

▶ 담보내역

순번	담보명	세부내역	화폐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료	목적물
1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담보		WON	대인	any one incident/occurrence in the aggregate any one policy year 50,000,000	100,000	79,090	1
			WON	대물	any one incident/occurrence 2,000,000	100,000	79,090	

▶ 기타조건

[가온방문간호요양센터] 통지기간연장담보:60일
소급일자:2021-07-19
배상기준:배상청구기준
담보지역:대한민국

▶ 목적물사항

순번	목적물명	목적물내역	업종	산출기초
1	가온방문간호요양센터	요양보호사배상책임(구득용)	기타전문인	연간매출액:(95,160,000) WON

약관사항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구득) 보통약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담보
날짜인식오류부담보 추가약관	

계약메모

■계약자 및 피보험자: 대한간병복지연합회 소속 재가서비스기관.(공동계약자: 대한간병복지연합회)
--

모집점포 Corporate Solution 3팀

모 집 인 보험대리점 : 경영지원인스 오혜영 연락처 : 010-4556-2797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1600-3434 www.lotteins.co.kr

발행일자 : 2021년 07월 19일 15:33:06 본사 에서 작성함

상품명 : 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증권번호 : FALI20210465044)

■위험 : Professional Liability to third party arising out of the insured's Negligent Errors & Omissions in rendering or failure to render professional services as below.

(요양보호사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주의, 과실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 Covered Services: In-Home Services by Care-Helper based on the Aged Long-Term Care Insurance Law(노인장기요양보험법)

CASE I) Covered by Long-Term Care Insurance (급여서비스)

a. Home-visit Care: A long-term care staff visits a beneficiary's home and helps in the physical activities, housekeeping and so on. (bathing, excretion, going to the bathroom, changing clothes, washing hair, cooking, buying daily necessities, cleaning up surroundings)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b. Home-visit Bathing : A long-term care staff visits a recipient home and provides bathing service using a bathing device.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CASE II) Not Covered by Long-Term Care Insurance (Option): 비급여(선택사항)(단기간가입 불가)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권 : Korea Only

■소급일자 : 각 계약 보험개시일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상 CASE A~D 및 EPD PD에 한함

□EPD PD: KRW 5,000,000.-(a.o.c)/ KRW 10,000,000.-(agg-요양보호사당)

DED: KRW 1,000,000.-(a.o.c)

※ 청약서, 증권, 가입설계서 상 배상책임위험 보상한도액 일괄로 표기됨에도 불구하고 위 조건(CASE A~D)의 PI (대인), PD(대물)의 보상한도액을 각각 적용.

■보험조건:

1) 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Claim-made Basis)

2)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

3) Extended Reporting Period : 60 days

4) Nuclear Energy Liability Exclusion Clause

5) Contractual Liability Exclusion Clause

6) All Costs & Expenses are included within the L.O.L

7) Millennium Exclusion Clause

8) Asbestos Exclusion Clause

9)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

10) Claims Co-operation Clause

11) War & Terrorism Exclusion Clause

12) 물적손해 확장 추가특별약관 (EPD): 보험회사는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9호에도 불구하고, 방문목욕 중 피보험자가 방문목욕서비스 차량 및 목욕기구에 입힌 물적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조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과 상충되지 않는 한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을 따릅니다.

13) 피보험자 적용 추가특별약관 : 보험회사는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 제3조(보상않는손해) 제38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보험회사에 통지 또는 승인되지 않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조건들은 이 추가 특별약관과 상충되지 않는 한 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특별약관(배상청구기준)을 따릅니다.

14) 본 보험에서 담보하는 요양보호사는 일반요양보호사를 말하며, Family Care-Helper (가족요양보호사)는 담보대상에서 제외함.

15)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 N/A

※ 직전3년 손해를 80% 초과계약 가입불가

※ 계약체결시 질문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설치신고필증, 직전년도 결산총괄표 (결산총괄표가 없는 신규사업자 등 에 한하여 예상총괄표 제출) 첨부 조건

※ 보험사고 발생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의해지 불가.

※ 해당 요율은 직전년도 매출액(결산총괄표 상 요양급여수입)을 기준으로하나, 신규사업자 등의 사유로 결산총괄표가 없는 경우, 당해년도 매출액(예상총괄표 상의 요양급여수입)으로 합니다.

보장내용요약 (보장내용은 중요한 내용만을 발췌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담 보 명	담 보 내 용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담보	

소비자보호 강화조치 안내문

◆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보험계약자의 권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청약철회 제도 확대) 일반 금융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21.3.24 이전 가입고객	21.3.25 이후 가입고객
청약철회 가능기간	다음 중 먼저 도래한 기간까지 청약철회 가능 ①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②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예외대상	1)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1)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가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계약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계약자가 전문보험계약자인 경우 * 전문보험계약자 : 단체보험 등	3) 계약자가 전문금융소비자인 경우 * 전문금융소비자 : 단체보험 등 ※ 다만, 청약시점에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 가능
	4)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일반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에 관하여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5)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계약	5)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신청절차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제출 또는 통신수단 이용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
법률근거	보험업법 제102조의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②(위법계약해지권 신설) 판매자가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위법계약에 따른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사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s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제19조(설명 의무) 제1항 및 제3항)
 - 불공정영업행위 해당 (금소법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 부당권유행위 해당 (금소법 제21조(부당권유행위))
- (행사가능 기간) 다음 두 가지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전
 - ①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②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해지절차)
 - ① 계약자는 계약해지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법 위반사실 포함)
 - ② 보험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 통지
 - * 거절시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수락여부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가능
- (해지효과)
 - ①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반환금 지급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요구 불가
 - * 다만,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위험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